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김우영 · 박지혜
이성윤 · 맹성규 · 민병덕
양부남 · 김남근 · 모경중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,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,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·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·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.

그러나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,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.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.

한편,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

하고 있으나, 기금의 용도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,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제15호).

법률 제 호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5.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. 1. ~ 14. (생 략) 15.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 법」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 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26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 법」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 을 위한 지원 1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